

미니시리즈
노동법 극장

사장님 미린 월급 주세요!

- 임금이 밀린 아르바이트생 L씨 이야기 -



“사정이 어려워 일하던 **가게가 문을 닫은**
아르바이트생 L씨는 마지막 2개월의
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.

사장님은 사정이 나아지면 밀린 월급을
꼭 주겠다고 하는데요.”

사장님.
아직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.
언제 주실 수 있나요?

미안하다고 했잖아.
다음달에 꼭 줄게.





“월급, 늦게 줘도
되나요?”

NO! 임금지불은 원칙대로!

통화* 지급
(유통되는 화폐)

**근로자에게
직접 지급**

**매달 정해진
지급일에
지급**

**근로계약에
정한 금액
지급**

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

“가게가 문을 닫아서
나중에 받기로
합의를 한다면요?”

특별한 사정이 있어
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.

그러나 이 또한 **14일 이내**에 이루어져야 하고
그 이후엔 합의를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.

퇴사자의 퇴직금도 예외 없이 **14일 이내에 지급**해야 합니다.



“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
준다고 하는데
그래도 되나요?”

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,
통화 지급이 원칙입니다!

**임금으로
보기 어려운
금품**

- ☑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
- ☑ 호의적·은혜적 금품(결혼축의금 등)
- ☑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
- ☑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



“밀린 임금,
받을 수 있는 방법이
전혀 없나요?”

퇴직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
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일반 체당금

퇴직한 근로자가
기업의 도산 등으로
임금을 못받은 경우

소액 체당금

퇴직한 근로자가
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
임금을 못받은 경우



정해진 날, 정해진 임금 지급으로
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꽃길만 걸어요~

더 자세한 내용은?



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누리집 <http://www.moel.go.kr>